



“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8 / 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장 백영기(6574) / 보험정책팀장 박우민(6581) / 보험정책팀 대리 강지윤(6578)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11208호

시행일자 2026. 1. 1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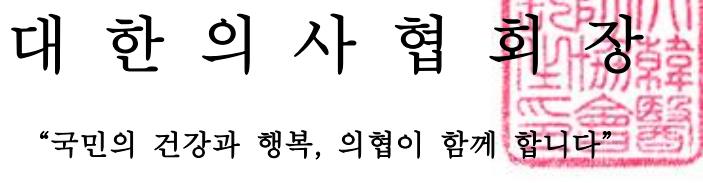
제 목 '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' 변경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8126호(2025. 12. 10.)
3. 보건복지부는 '25.10.20. 중대본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에 따라 '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' 적용 대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
4. 이와 관련, 필수의료 분야 인력공백 해소 및 지역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 적용대상에 '응급의학과'를 추가하여 재변경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구분	종전조치('25. 10. 20.)	변경조치('25. 12. 15.)
법적근거	<p>「의료법」제33조제1항제3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</li> </ul> <p>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</p>	
적용대상	<p>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「의료법」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<u>필수 진료과목*으로 한정</u>하여 종전조치 지속</p> <p>*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, 치과</p> <p>**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'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'을 통해 '기타' 인력으로 신고</p>	<p>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「의료법」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<u>필수진료과목</u></p> <p>② <u>응급의학과</u></p>
시행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</li> <li>- <u>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.12.31. 종료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필수진료과목+응급의학과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</li> <li>- <u>필수진료과목 + 응급의학과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.12.31. 종료</u></li> </ul>

※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(T. 1644-2000) 끝.



\* 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 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